

다이어트 계약서

본 계약(이하 “본 계약”)은 2025년 10월 20일,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에서 아래 당사자 간에 체결되었다.

- 이지우 (이하 “갑”)
- 채성원 (이하 “을”)

갑과 을은 건강 증진 및 연애 관계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체중 및 체지방률 감량 목표 달성 시 소원성취권의 행사 및 외박 관련 권리·의무 사항 등을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,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.

제 1 조 (목적)

본 계약은 당사자 간 체중 및 체지방률 감량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, 목표 달성 시 소원성취권 행사 및 갑의 거소 내 을의 외박 횟수 조정 등 연애 관계 내 권리·의무 사항을 규율함으로써, 상호 동기 부여 및 관계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정의)

- ① “소원성취권”이라 함은 본 계약 제 3 조 내지 제 4 조에 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, 상대방의 거부권 행사 없이 인신 구속을 포함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1 회의 소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
- ② “합리적 범위”라 함은 민법 제 103 조(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)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서, 연애관계의 건전성과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한다.
- ③ 소원성취권은 양도, 상속, 담보 제공 또는 제 3 자 이전이 불가능하다.
- ④ 소원성취권 행사 시 이행 거부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, 불이행 시 강력한 삐짐 및 감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.

제 3 조 (갑의 감량 목표 및 소원성취권 행사)

① 갑은 2025년 10월 13일 측정된 체중(이하 "X")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감량 목표를 달성할 경우, 갑은 각 목표 달성에 대응하여 소원성취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다.

감량 수치	소원성취권 행사 가능 횟수	증빙 기준
X - 5kg 달성	1회	사진 증빙
X - 10kg 달성	1회	동일
X - 15kg 달성	1회	동일

② 달성 여부는 당사자 공동 측정 또는 을이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확정한다.

③ 소원성취권의 행사는 달성 증빙일로부터 1주일(7일)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, 기간을 경과한 경우 소멸한다.

제 4 조 (을의 감량 목표 및 소원성취권 행사)

① 을은 2025년 10월 20일 측정된 체지방률(이하 "Y")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감량 목표를 달성할 경우, 을은 각 목표 달성에 대응하여 소원성취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다.

감량 수치	소원성취권 행사 가능 횟수	증빙 기준
Y - 5%p 달성	1회	인바디 측정
Y - 10%p 달성	1회	동일
Y - 15%p 달성	1회	동일

② 달성 여부는 인바디 결과지 등 객관적 측정자료 또는 갑의 직접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.

③ 소원성취권의 행사는 달성 증빙일로부터 1주일(7일)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, 기간을 경과한 경우 소멸한다.

제 5 조 (갑의 거소 내 을의 외박 횟수 완화)

① 갑이 제 3 조 각 호의 감량 목표를 달성할 경우, 을이 갑의 거소(자취방)에 외박할 수 있는 최대 횟수는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증가한다.

감량 수치	을의 외박 가능 횟수 (주 단위)	비고
현행	최대 2 박/월	기본 상태
-5kg	최대 1 박/주	단계 1 완화 (금 → 토)
-10kg	최대 2 박/주	단계 2 완화 (금 → 토, 토 → 일)
-15kg	최대 3 박/주	사실상 반동거 상태

② 본 조의 목적은 갑이 을과의 체류 시간을 확대함으로써 감량 성취를 연애 관계의 질적 향상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.

③ 을은 본 조에 따른 갑의 외박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, 거절 시 소원성취권 1회 추가 행사 또는 적정 수준의 보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.

④ 불가피한 사유(질병, 출장, 학업 등)로 외박이 어려운 경우, 그 사유의 정당성 판단은 갑의 주관적 재량에 따른다.

⑤ 본 조에서 정한 '외박'은 숙박을 전제로 하며, 단순 방문은 외박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.

제 6 조 (소원성취권의 행사 절차)

- ① 소원성취권은 감량 목표 달성 및 증빙 완료 시점으로부터 1 주일 이내 행사하여야 한다.
- ② 소원성취권 행사 시 상대방은 즉시, 무조건적, 그리고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.
- ③ 행사 내용이 명백히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생명·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, 가위바위보 3 판 2 선승제로 재조정 절차를 개시한다.
- ④ 소원성취권은 현금화할 수 없으며, 타인에게 양도 또는 위임할 수 없다.

제 7 조 (분쟁 해결)

- ①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우선 해결한다. 협의는 반드시 광화문 또는 한강 산책을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.
- ② 협의가 결렬된 경우, 가위바위보 3 판 2 선승제를 통해 최종 해결한다.
- ③ 본 계약에 관한 민·형사상 소송 제기는 쌍방 모두 불가하며, 감정적 타격만이 유일한 제재 수단으로 인정된다.

제 8 조 (기타 조항)

- ① 본 계약은 사랑과 애정을 기반으로 체결되었으며, 실질적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.
- ② 단, 연애관계 내 정서적 구속력은 매우 강력하며, 이는 법적 강제력에 준하는 수준의 도덕적·연애적 효력을 가진다.
- ③ 특히, 비법조인인 을의 권리가 법조인인 갑에 의해 침탈되거나 불균형하게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, 본 계약의 법적 구속력은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

④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, "그때 그 기분"에 따라 갑의 해석을 우선한다. 단, 갑이 무리수를 둘 경우 가위바위보로 조정한다.

⑤ 본 계약은 쌍방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체결된 것이며, 강요·기망 기타 불법적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다. 단, 운동 강요는 예외로 본다.

제 9 조 (계약의 효력 및 서명)

① 본 계약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② 본 계약은 서면 서명으로 성립되며, 그 효력은 국제 조약 수준으로 간주한다.

③ 본 계약은 2부 작성되어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본 계약이 위와 같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, 당사자 쌍방은 본 계약서에 서명·날인한다.

2025년 10월 20일

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

당사자	성명	서명/날인
갑	이지우	_____ (인)
을	채성원	_____ (인)